업 무 연 락

(2022. 1. 18.)

수 신 :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

제 목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대응 관련 호소문 전달 및 대응계획 알림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농장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2일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본회에서는 정부의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축산업 말살법」으로 보고, 한돈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히 맞설 계획입니다.

4. 이에 본회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과 함께 향후 대응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돼지를 키우느라 땀흘리시는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 우리협회가 금번 법령개정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한돈농가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호소문 1부

2) 가전법 대응 계획 1부 “끝”

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붙임 1

호 소 문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친애하는 전국의 한돈농가 여러분!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묵묵히 돼지를 키우느라 땀흘리시는 동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축산말살 정책으로부터 한돈산업을 함께 지키자고 호소합니다.

정부는 최근 8대 방역시설의 전국의무화 방침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농장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단 1번이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축전염병의 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 농가에서 가축사육을 3개월간 제한받고,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한돈농가에서 3개월 사육제한 처분만으로도 돼지 사육 특성상 사실상 1년 9개월(모돈 입식, 자돈 생산·출하) 동안 수익이 중단되어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되던 8대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농장에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초법적 규제입니다.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과도한 의무를 만들고 농민의 생업을 말살시킬 권리를 누가 부여했습니까? 협회는 명백한 농정독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잘못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음에도 수차례 의견수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개정(안)을 단 23일간(1.12 ~ 2.3)의 입법예고 등 최소한의 요식 행위만 취하고 날치기 통과시킬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전국 축산농가·언론·소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무엇이든 멋대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함 앞에 전국 축산농가들과 연대해 싸울 것입니다.

선진 축산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모돈이력제 또한 불통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의 산물입니다.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정책 수혜자인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수년간 인력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한돈산업을 낭떠러지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돈농가 여러분 !

부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축산농가 말살법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모돈이력제가 한돈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독재가 당장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대한한돈협회 회 장 손 세 희

붙임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응계획

❑ 정부 입법예고 (1. 12 ~ 2. 3)

1) 방역시설(8대 시설 포함) 설치·운영 위반시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 (시행령)

2) 8대 방역시설 전국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2021. 1. 18.

(사) 대 한 한 돈 협 회

Ⅰ. 기본 방향

수용불가능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모든 수단을 통해 알려서 정부를 압박**하고,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점**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상하고 관철**시키고자 함

❑ 추진 전략(안)

입법예고 이전(~2.3)		입법예고 이후(~시행)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과도한 규제를 알리고 압박		협회가 마련한 협상안과 정부의 개정안과 협의 진행
• 축단협 공동 기자회견 • 축산업계 서명운동 전개 • 방역/수의 단체 지지성명 • 로펌 법리검토(위헌 등) • 일간지 전문가 기고(릴레이) • 지역 국회의원 방문 - 전 국회의원 호소문 전달 • 대선후보 의견 전달 • 축단협 협상안 마련 등	⇒	• 축산단체-정부 간담회 요구 • 입법절차에 따른 검토기관 의견 제출 (법제처, 규제개혁위) • 축단협 개정안 대응 발의(국회) • 국회 토론회(축단협) • 국회 대정부 질의 및 답변요구 • 축산단체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농성 추진 • 대선 캠프(인수위) 의견 전달 • 방송, 일간지 등 홍보 집중

❑ 축산단체 공동대응 방향

공통사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농장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켜, 기존 단체별 현안(낙농 가격결정제도, 한돈 모돈이력제, 가금 AI 등)을 함께 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Ⅱ. 세부 추진전략 (입법예고 이전: ~2. 3)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1.19)

❍ 1/17 축산관련단체 실무책임자 회의를 통행 세부 계획 수립

- 농식품부 앞, 축산생산자 단체 중심
- 기자회견문, 일간지 기자 등 섭외, 발언내용 등 준비
- 정부 규제 도입근거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작성(~ 1.18)

2. 범 축산업계 서명운동 전개 (1.17~2. 3)

❍ 축산농가는 물론 사료, 약품, 유통 등 축산업계 서명운동 전개

- 한돈의 경우, 8대시설 의무화 포함 1만명 서명 목표
- 서명부(취지, 명부) 작성 및 배포(1.17)

3. 방역/수의단체 지지 성명 (~1. 21)

❍ 대한수의사회, 돼지수의사회 등 방역/수의 전문가 단체 성명 발표 추진

- 협의 및 요청 문서시행(1. 17)
- 필요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성명도 검토

4. 법무 법인(로펌) 법리 검토 (~1. 25)

❍ 한돈협회 법률자문 '화우' 계약 완료 및 가전법 법률자문 요청(1. 18)

- ① 8대 시설 전국설치 의무화 ② 사용중지/폐쇄명령 위헌 소지 등
- 질의사항 정리 및 직접 면담(1. 18)

5. 전국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요청 (1.17~2. 3)

❍ 축단협 실무자 회의결과에 따라 시군별 축단협에서 지역 국회의원 면담 요청 추진(1. 18)

❍ 한돈협회는 별도로 전국 국회의원에 8대 시설, 모돈이력제를 포함한 호소문 작성 및 배포(1. 17)

6. 전문가 의견 수렴 (~1. 21)

❍ 방역/수의 전문가, 축산 전문가 입장 및 의견수렴 시

- 축산(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정리

7. 일간지 기고 (~1. 28)

❍ 방역 전문가(강원대 박선일 교수, 대한수의사회장 등), 축산전문가(서울대 김유용 교수 등) 기고 일간지 릴레이 게재

- 단순히, 강한 규제 반발이 아닌 과학적인 방역상 필요한 수준을 제시하고(예: 8대시설 중 4대 시설), 축산업의 기반 붕괴 주장

8. 대선 후보 의견 전달 (~1. 28)

❍ 양 당 대선후보 캠프 담당자 연락 및 전달방식 협의(1.19)

9. 한돈협회(축산단체)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 3)

❍ 단순한 반대의견 제출이 아닌 충분한 반박논리와 서명부, 법리검토 내용, 전문가 의견을 포괄한 반대의견(보고서 형식) 제출

- ①서명부 ②법리검토 의견 ③방역/수의 전문가 의견 ④축산업계 의견 등
- 한돈협회의 경우, 8대 방역시설까지 포함한 의견 제출

Ⅲ. 세부 추진전략 (입법예고 이후: 2. 3~5월말)

1. 축산단체-정부 간담회 요구 (2월 중순)

❍ 입법예고 제출안(축산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정부 수용 요구

❍ 총리실(국무조정실)에 축산업계와 정부 협의 조정 요청

2. 입법 절차에 따른 검토기관(법제처, 규제개혁위) 의견 제출 (2. 3)

❍ 입법예고 이후 거쳐야 하는 법제처, 규제개혁위에 축산업계 제출안 전달 및 설명

- 반대의견이 없고 의견수렴을 마쳤다는 정부 자료에 대한 전면 반박

3. 정부안 상쇄를 위한 대응 법률안 발의 (2월 말)

❍ 정부의 과도한 규제(시행령, 시행규칙)를 근본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규제 시행(공포) 저지

4. 국회 토론회 개최 (3월 초)

❍ 대선 직후(대선 전 국회 토론회 어려움) 국회 대토론회 개최

- 농해수위원장, 축산단체 공동 주최 등 추진
- 국회 토론회는 3월에 개최되나 포스터 제작 등 사전 행사 준비로 이슈화 (2. 3 이후)

5. 국회 대정부 질의 (2월 ~ 3월)

❍ 정부가 규제 시행을 강행할 수 없도록 대 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 대책 요구

- 최소 5개 의원 이상, 각 축산단체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질의 확대

※ 한돈협회 3개 의원(김태흠, 위성곤, 홍문표) 질의 중(1. 12)

6. 대선 캠프(인수위) 의견 전달 (3월 중)

❍ 대선 이후, 인수위에 축산단체 입장 전달 추진

- 인수위 앞 기자회견 등도 검토

7. 축산단체 1인 시위, 집회, 농성 돌입 (2. 3 ~)

❍ 축단협 축산단체장 회의를 통해 입법예고 종료일을 기점으로 추진

- 예) 농식품부 앞 농성,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8. 방송, 일간지 등 집중 홍보 (2. 3 ~)

❍ 정부의 축산업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이에 대한 축산단체의 반발을 크게 계속 이슈화 하여 정부의 규제 시행을 저지